##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85

발의연월일: 2022. 10. 24.

발 의 자: 박광온 · 김영배 · 김철민

전용기 · 송갑석 · 이장섭

민병덕 · 김주영 · 홍성국

윤영찬·임호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 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장기관은 세대주가 아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세대주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주거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급권자의	<u>범위</u> )	1.2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보장기관은 세대주가 아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세대
			주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개인 단위로 주거급여
			를 실시할 수 있다.